

공통 및 직무자격증 인정범위

□ 공통자격증

구 분	평가등급		
	A	B	C
국어능력	· 국어능력인증 ¹⁾ 1급 · KBS한국어능력 1급 · 한국실용글쓰기 1급	· 국어능력인증 ¹⁾ 2급 · KBS한국어능력 2+급 (2-급 포함) · 한국실용글쓰기 2급	· 국어능력인증 ¹⁾ 3급 · KBS한국어능력 3+급 (3-급 포함) · 한국실용글쓰기 준2급
IT능력	· 컴퓨터활용능력 1급 · 정보처리기사	· 컴퓨터활용능력 2급 · 정보처리산업기사	· 컴퓨터활용능력 3급 · 정보처리기능사
한국사	· 한국사능력검정 1급	· 한국사능력검정 2급	· 한국사능력검정 3급

주1) '국어능력인증'시험은 국가공인 자격 상실('20.1월부)에 따라, 국가공인 기간 내(~'19.12.31.)

취득 및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발급·유효한 경우에만 인정

- *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발급·유효한 경우에만 인정
- * 동일 분야(국어능력, IT능력, 한국사) 내 높은 등급 1개만 인정

(예시1) 한국사능력검정 1급 및 2급 동시 보유 시, 1급 자격 점수만 인정

(예시2) 컴퓨터활용능력 1급 및 정보처리기사 동시 보유 시, 1개 자격 점수만 인정

(예시3) 국어능력인증 1급 및 컴퓨터활용능력 2급 동시 보유 시, 각각의 자격 점수를 인정

- * 전산 분야 직무 특성 감안, IT능력 자격증은 직무 자격증으로 인정(공통자격증에서 평가 제외)

□ 직무자격증

구 분	평가등급		
	A	B	C
기술 (건축)	· 건설안전기사	· 건설안전산업기사	-
	· 건축기사	· 건축산업기사	-
	· 건축설비기사	· 건축설비산업기사	-
	· 도시계획기사	-	-
	· 산업안전기사	· 산업안전산업기사	-
	· 실내건축기사	· 실내건축산업기사	· 실내건축기능사
	-	· 건축일반시공산업기사	-
	-	-	· 전산응용건축제도기능사

구 분	평가등급		
	A	B	C
기술 (전기)	· 산업안전기사	· 산업안전산업기사	-
	· 소방설비기사 (전기분야)	· 소방설비산업기사 (전기분야)	-
	· 전기공사기사	· 전기공사산업기사	-
	· 전기기사	· 전기산업기사	· 전기기능사
	· 전기철도기사	· 전기철도산업기사	-
	· 전자기사	· 전자산업기사	-
	-	-	· 전자기기기능사
	-	-	· 철도전기신호기능사
기술 (기계)	· 건설기계설비기사	· 건설기계설비산업기사	-
	· 건설기계정비기사	· 건설기계정비산업기사	· 건설기계정비기능사
	· 건축설비기사	· 건축설비산업기사	-
	· 공조냉동기계기사	· 공조냉동기계산업기사	· 공조냉동기계기능사
	· 기계설계기사	· 기계설계산업기사	-
	· 메카트로닉스기사	-	-
	· 산업안전기사	· 산업안전산업기사	-
	· 소방설비기사 (기계분야)	· 소방설비산업기사 (기계분야)	-
	· 일반기계기사	-	-
	· 전산응용기계제도기사	-	· 전산응용기계제도기능사
	· 정밀측정기사	· 정밀측정산업기사	· 정밀측정기능사
	-	· 기계가공조립산업기사	· 기계가공조립기능사
	-	· 기계정비산업기사	· 기계정비기능사
	-	· 생산자동화산업기사	· 생산자동화기능사

구 분	평가등급		
	A	B	C
전산 (정보기획)	· 빅데이터분석기사	-	-
	· 전자계산기기사	-	· 전자계산기기능사
	·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	-	-
	· 정보보안기사	· 정보보안산업기사	-
	· 정보처리기사	· 정보처리산업기사	· 정보처리기능사
	-	· 사무자동화산업기사	-
	-	·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	-
	-	-	· 웹디자인기능사
	-	-	· 전자기기기능사
	-	-	· 정보기기운용기능사
	-	-	· 컴퓨터그래픽스운용 기능사
	· CISA(국제공인정보시스템 감사사)	-	-
· CISSP(국제 공인 정보 시스템보안전문가)	-	-	
전산 (전산방송운영)	· 무선설비기사	· 무선설비산업기사	· 무선설비기능사
	· 방송통신기사	· 방송통신산업기사	· 방송통신기능사
	· 정보통신기사	· 정보통신산업기사	-
학예	· 2급 정학예사 이상	· 3급 정학예사	· 준학예사

*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발급·유효한 경우에만 인정

* 동일 자격종목 내 높은 등급 1개만 인정

(예시1) 전산(정보기획) 분야 지원자가 정보처리기사 및 정보처리산업기사 동시 보유 시,
정보처리기사 자격 점수만 인정

(예시2) 기술(건축) 분야 지원자가 건축기사 및 건설안전기사 동시 보유 시,
각각의 자격 점수를 인정